

# 시립문래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82
----------	------

2023년 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3년 8월 14일
- 다. 회부일 : 2023년 8월 21일
- 라. 상정일 :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문래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 만료 예정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 제11조

○ 추진의 필요성

- 시립문래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3)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10
- 개관일자 : 1987.4.14.
- 시설규모 : 부지 2,314 $m^2$  / 건물 5,611 $m^2$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공연장, 청소년전용공간 ‘나나랜드’, 프로그램실, 청소년자치활동실, 생태체험학습장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3년(2024.1.1 ~ 2026.12.31.)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560백만원(20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695백만원, 운영비 981백만원, 사업비 2,690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194백만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 반영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가.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4건(재위탁 4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새로운 청소년 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시설을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 제320회 임시회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의안번호	시설명	구분	위탁동의안 개요
1181	시립마포청소년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li> <li>- 개관일자 : 2008.11.1.</li> <li>- 시설규모 : 부지2,286.25㎡/건물5,208.74㎡</li> <li>- 위탁기간 : 3년(2024.1.1~2026.12.31.)</li> <li>- 선정방식 : 공개모집</li> <li>- 소요예산 : 4,300백만원(2023년)</li> </ul>
1182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10</li> <li>- 개관일자 : 1987.4.14.</li> <li>- 시설규모 : 부지 2,314㎡ / 건물 5,611㎡</li> <li>- 위탁기간 : 3년(2024.1.1 ~ 2026.12.31.)</li> <li>- 선정방식 : 공개모집</li> <li>- 소요예산 : 5,560백만원('23년)</li> </ul>
1183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57가길 26</li> <li>- 개관일자 : 2009.04.01.</li> <li>- 시설규모 : 부지 1,647㎡ / 건물 5,024㎡</li> <li>- 위탁기간 : 3년(2024.1.1 ~ 2026.12.31.)</li> <li>- 선정방식 : 공개모집</li> <li>- 소요예산 : 2,087백만원('23년)</li> </ul>
1184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61</li> <li>- 개관일자 : 1999. 5.</li> <li>- 시설규모 : 부지 252.72㎡ / 건물 252.72㎡</li> <li>- 위탁기간 : 3년(2024.1.1 ~ 2026.12.31.)</li> <li>- 선정방식 : 공개모집</li> <li>- 소요예산 : 1,088백만원('23년)</li> </ul>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위탁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의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 운영의 투명성 훼손 및 민간단체의 부속시설화 등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위탁사무의 적정성, 경제적 효율성, 성과의 효과성,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확보 여부,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경쟁력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금번 제출된 청소년시설 4개소 모두 2023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이가 필요한 상황인바,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성과, 재위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설형'과 '사무형' 구분

- 시설형 위탁 : 행정재산(서울시 소유시설,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와 해당 시설을 활용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사무형 위탁 :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재계약 및 재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 재위탁: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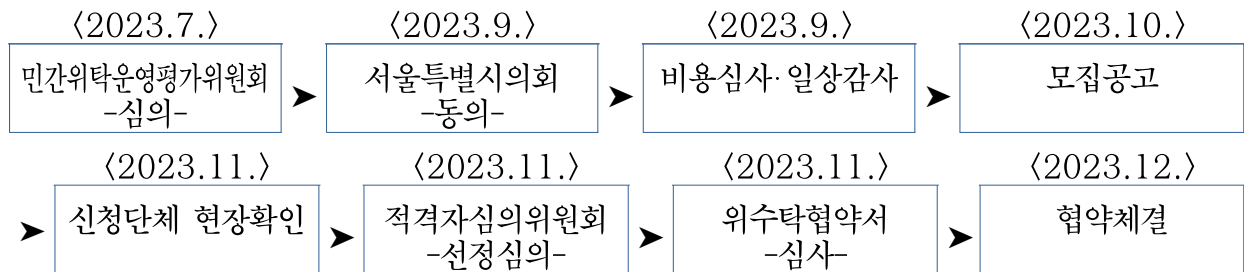
-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법률(「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이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게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청소년시설의 설립목적에 맞는 전문성과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단체(법인)의 전문성과 경험 등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청소년 활동·교류·문화·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법률의 취지와 평생교육국의 목적(청소년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이 같은 것으로 보여,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평생교육국은 서울특별시의회 동의(9월) 후 10월 모집공고, 적격자심의위원회(11월)를 거쳐 새로운 청소년단체(수탁기관)을 선정(12월)하고, 2024년 1월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당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예정에 있음.



- 민간위탁을 규율하는 조례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들의 위탁사무는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없이, 청소년들에게 전문지식이나 경험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지원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나. 동의안 검토

- 본 동의안은 명지학원(‘학교법인 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문래청소년센터(이하 ‘문래청소년센터’)의 위탁이 만료(2023.12.31.)될 예정으로, 새로운 단체를 선정(공모)하여 본 시설을 3년간(2024.1.~2026.12.)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 시립문래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10
- 개관일자 : 1987.4.14.
- 시설규모 : 부지 2,314㎡ / 건물 5,611㎡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공연장, 청소년전용공간 ‘나나랜드’, 프로그램실, 청소년자치활동실, 생태체험학습장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민간위탁기간: 3년(2024.1.1 ~ 2026.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5,560백만원(20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695백만원, 운영비 981백만원, 사업비 2,690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194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문래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활동·체험 등과 복지·상담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평생교육국은 법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본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 문래청소년센터는 문래역(2호선)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6년 개관하여 2019년부터 5년간 명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본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시설로, 2023년 현재 38명(정규직19명, 비정규직 19명)의 직원이 55억 6천만원(민간위탁금 7억 2천 8백만원 포함)의 예산으로, 총 2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위치도 〉



〈 최근 3년간 ‘시립문래청소년센터 결산’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단위:천원)

구분	센터 총 예산		민간위탁금	
	예산	결산	예산	결산
2023년 7월 기준	5,560,000	3,338,337	728,000	530,518

**< 2023년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인력현황 >**

(단위:명)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정원	28	28	1	1	0	3	4	8	6	3	2	0	0	0
현원	38	19	1	0	1	5	5	5	1	1	0	19	19	0

**< 최근 3년간 '시립문래청소년센터 결산' 및 '민간위탁금' 정산 결과 >**

(단위:천원)

구분	센터 결산		민간위탁금 정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2022	5,000,000	4,462,755	728,000	728,000
2021	4,130,000	3,717,603	691,468	691,468
2020	3,720,000	3,268,704	909,044	909,044

**<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위탁경과 >**

- 1986.12.01.~1991.11.30. : 신규 [서울YMCA]
- 1991.12.01.~1996.11.30. : 재위탁 [서울YMCA]
- 1996.12.01.~1999.11.30. : 재위탁 [서울YMCA]
- 1999.12.01.~2002.11.30. : 재위탁 [서울YMCA]
- 2002.12.01.~2006.04.16. : 재위탁 [서울YMCA]
- 2006.04.17.~2006.12.31. : 재위탁 [한국청소년지도자연맹]
- 2007.01.01.~2014.04.11. : 자치구위임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 2014.04.12.~2016.12.31. : 재위탁 [(재)송석문화재단]
- 2017.01.01.~2018.12.31. : 재계약 [(재)송석문화재단]
- 2019.01.01.~2021.12.31. : 재위탁 [(학)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 2022.01.01.~2023.12.31. : 재계약 [(학)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 2023년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사업현황 〉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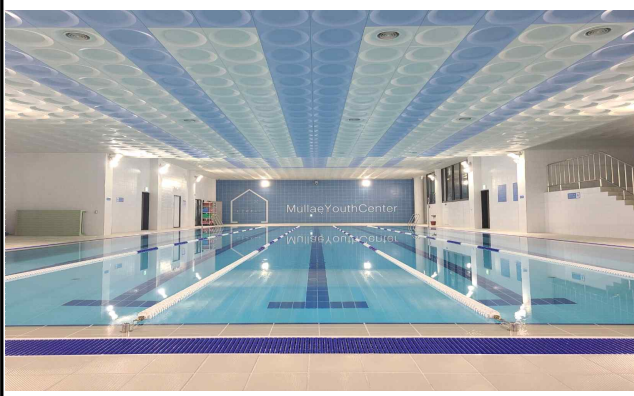
구분	계	영역별 프로그램				시설사용	특별지원	기타
		교육문화	목적	생활체육	상담지도			
문래	233	0	168	4	14	1	37	9

〈 시립문래청소년센터의 시설 사진 〉



센터전경

옥상 생태환경 텃밭



수영장



청소년전용공간 (나나랜드)



체육관



청소년 힐링공간 (마음풀)

- 문래청소년센터는 기본적인 청소년 활동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계 교육과 함께, 다양한 생태체험을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운영성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도 높게(100점 만점 중 99.3점) 나타났음.
- 다만,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마포청소년센터와 같이 문래청소년센터에서도 유아 및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청소년 프로그램화, 청소년 프로그램 과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수영을 ‘평생 체육사업’으로, 성인 취미는 평생교육 내 ‘문화교육’, 유아 발달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내 ‘평생건강’이라고 분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활동과 평생교육은 유사하나 목적의 차이가 있는바, 청소년시설에서 불필요한 개념의 도입보다는 청소년시설 설치 목적에 따라 목적사업 사업추진에 집중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문래청소년센터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유아스포츠단의 교육과정을 “누리교육과정과 체육활동을 접목한 신체적 발달을 위한 유아 전문 프로그램”으로 설명하고 있음.

〈 시립문래청소년센터의 사업분류 - 유아스포츠단 〉



출처 : 시립문래청소년센터 홈페이지

### 〈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유아스포츠단의 교육목적 〉

서울특별시립문래청소년센터의 목적인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통한 정서함양을 위해 유아기부터 소중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누리교육과정 5개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및 연령별 학습과 다양한 체육활동(수영, 인라인스케이트, 학교체육, 음악체육, 놀이체육 등)을 접목하여 신체적 발달과 지성, 감성, 사회성을 개발하며, 나아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조화로운 인격체의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유아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출처 : 시립문래청소년센터 홈페이지

- 누리교육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위한)교육 과정이며, 본 센터는 청소년시설이고, 본 센터의 유아체능단은 교육기관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는 기관이며, 유아스포츠단은 특별 프로그램(전문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 누리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시민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것(교육과정+체육활동=유아 전문 프로그램 → 시립시설에서 시행 → 신뢰성 확보)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시립시설 내에서 인가받지 못한 교육(또는 보육)을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문래청소년센터는 유아스포츠단이 '본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청소년센터의 사업 영역에는 유아스포츠단은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서울특별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이용하여 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며, 시행규칙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업영역)

① 청소년센터는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3.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청소년활동사업
4.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업
5.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청소년센터 내 유아스포츠단의 운영

지역 기여를 위해 유아스포츠단 운영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각 구청 등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문래청소년센터는 시설을 대관하는 방식으로 추진 등 문래청소년센터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방안은 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문래청소년센터 유아체능단은 5세부터 7세까지 연령별 2반씩 총 6개반 (총 11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기제로 운영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민간위탁금은 전체 운영비의 13.1%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민간위탁금이 편성될 경우 문래청소년센터에서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할 이유도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위탁금의 정상화·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립문래청소년센터의 유아스포츠단 교육대상 〉

(단위:천원)

연령	출생년도	정원	교육시간
5세 (금붕어, 다람쥐)	2019년 1월~12월	각 반 16명 / 총32명	월~금10:00~15:00
6세 (돌고래, 사슴)	2018년 1월~12월	각 반 20명 / 총40명	월~금9:00~15:00
7세 (호랑이, 사자)	2017년 1월~12월	각 반 20명 / 총40명	월~금9:00~15:00

출처 : 시립문래청소년센터 홈페이지

〈 최근 3년간 ‘시립문래청소년센터 결산’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단위:천원)

구분	센터 총 예산		민간위탁금	
	예산	결산	예산	결산
2023월 7월 기준	5,560,000	3,338,337	728,000	530,518

- 문래청소년센터는 환경교육을 특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알파세대 (Generation Alpha)가 청소년으로 편입되고 있는바, 현재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알파세대에게 친숙한 방식의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의 병행이 필요 하다고 하겠으며,
- 접근성(거리, 시간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 본 센터의 특화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알파세대 (α세대, Generation Alpha)

- 알파세대(Generation α)는 세계적으로 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지칭함.
- 스마트폰 및 SNS의 대중화 이후 출생 또는 AI 기술 중 딥 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의 개발 시점 이후 출생 등 여러 가지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있으나, **2010년 이후 출생** 세대라는 점, **태어나면서 디지털과 함께 성장했다는 특징** **에는 이견이 없으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인류’라 하여 α세대라고 지칭하고 있음.
- 아직 어린 나이로, 세대별 구분되는 사회적 특징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나라별 세대 구분이 다르나, 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 비슷한 구분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세대구분 : 강점기세대[1910년대~1940년대 중반]→전쟁세대[1945~1954] →베이비붐세대[1955~1974]→386세대[1961~1969]→X세대[1965~1980]→M세대 [1980~1996]→Z세대[1997-2012]→α세대(2010년~))



## 다. 종합검토

- 서울특별시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에 위탁하여 효과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나,
  - 청소년의 특징과 성장환경 및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수련·문화·예술·스포츠·교류·교육·동아리활동 등) 제공방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시설의 조직구조 및 인력구성 등도 이에 맞춘 개선과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가 본 사무(청소년활동 진흥)를 민간에 위탁한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단체가 특정 기관을 장기 수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점(능력있는 단체의 안정적 운영) 뿐만 아니라 단점(일상화로 인한 효율성·효과성·투명성 저하, 혁신부재 등)도 부각되고 있는바, 개선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있는 새로운 단체의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시설에서 유아 및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계수하고, 유아스포츠단과 같은 비인가 교육활동 추진 등을 지속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청소년시설이 프로그램을 변형(유아·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청소년 프로그램화)하는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기준(청소년 이용률이 최소 60% 이상 유지) 준수와 부족한 운영비 마련(총 운영비의 약 20% 내외인 민간위탁금) 등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자력 충당하는 동시에 ‘청소년 사업을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지속적인 수탁(시설의 운영)이 가능한 상황임.

-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시립청소년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예산의 효율과 지역 기여의 문제’(민간위탁금을 충분히 편성하면 서울특별시의 재정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민간위탁금을 적게 편성하면 수익 사업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나 지역 기여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적절한 균형이 필요)로 인식하고 있으나,
  - 청소년시설 설치 목적의 왜곡(청소년활동→지역기여), 주요 이용대상의 변경(청소년→유아/성인), 위탁기관의 운영 목적의 변질(청소년활동 진흥→운영비 마련) 등 청소년시설에서 주객전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사안은 ‘지역기여와 청소년활동 간 균형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의 충분성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 수업시간으로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설 활용성을 높이는 일이나, 운영비 확보를 위해 지역 기여 사업을 확대(성인 및 유아 대상 프로그램 주류)하는 것은 청소년의 이용을 제약(청소년 프로그램의 축소 및 기타 이용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증가)하게 하는바,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 편성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시설은 운영비 마련에 급급하여 사실상 지역 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청소년시설의 역할·기능의 재정립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 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 후 효율적 운영방식의 선택(직영, 민간위탁, 자치구 위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시립문래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82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문래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 만료 예정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 추진의 필요성

- 시립문래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10
- 개관일자 : 1987.4.14.
- 시설규모 : 부지 2,314㎡ / 건물 5,611㎡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공연장, 청소년전용공간 '나나랜드', 프로그램실, 청소년자치활동실, 생태체험학습장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4.1.1 ~ 2026.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560백만원('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695백만원, 운영비 981백만원, 사업비 2,690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194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유진(☎2133-4121)